

1. 개정이유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전문성을 가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20226호, 2024.2.6. 공포, 202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조사,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형식승인·검정 제도 운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5조의2 신설)
-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대행기관 업무 명확화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7조 및 별표 3의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 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1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 라.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6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상전문기관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측시설 장애 및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감시
2. 관측시설 장애 초동대응, 지원 및 조치 결과 확인
3. 기상관측자료 품질 관리
4. 기상측기 예비품 관리
5.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사업 총괄
6.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상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⑨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승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승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관한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6조의5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5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대행업무의 범위

제7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제6조의3제10항 관련)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60mm
형식승인번호		40mm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제조번호		
모델명		
형식승인일	년 월 일	
변경승인번호		
변경승인일	년 월 일	
		30mm 30mm

비고: 소형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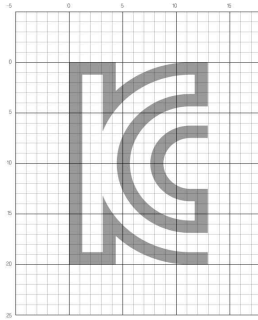
-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 1) 도안 요령

1-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1-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

2) 색채

2-1)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2-2)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 비교: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3. 표시 방법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는 기상측기에 각각 해야 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는 빗물 등에 젖지 않는 재질로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기상측기의 표면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6]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개월	4개월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4) 법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 센서부: · 지시·기록부:		측정범위 · 최소: · 최대:	
	모델(규격)			
형식승인서 신청		☐ 한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 ☐ 영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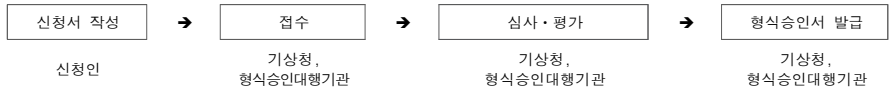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기상측기의 주요 재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를 포함합니다)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형식승인서
[] 변경승인서

구분	신규 []	재발급 []	형식승인번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승인 내용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 센서부: · 지시·기록부:	
	모델(규격)		
	특이사항		
※ 붙임: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험성적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의3제4항
[] 제6조의3제7항 에 따라

위와 같이 [] 형식승인서
[] 변경승인서 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기상청장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직인

210 mm×297 mm[백상지 80 g/㎡]

Certificate No.

☐ TYPE APPROVAL CERTIFICATE

☐ Changes in original TYPE APPROVAL CERTIFICATE
for Meteorological Instrument

Company	Name of Company		Company Registration Number
	Name of Representative		Phone Number
	Address		
Description	Product Name		
	Manufacturer		
	Manufactured Date		
	Manufacture No.	· Sensor Part : · Indicator or Recording Part :	
	Model (specification)		
	Remarks		
	※ Attachment: Test report(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meteorological instrument above has been tes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Paragraph 1(Paragraph 2) of the Weather Observation Standardization Act, and Article 6-3 Paragraph 4(Paragraph 7)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ssued on mm/dd/yyyy

[] Administrator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Head of the Compliance Organization

Seal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형식승인 분야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3.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 부동산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210 mm×297 mm[백상지 80 g/m²]

제 호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검정내용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모델 (규격)	제조 연월일	형식승인서 번호	제조번호	비고 (설치장소)
※ 붙임 : 기상측기 검정성적서							
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기상청장							
[] 검정대행기관의 장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년입니다							

210 mm×297 mm[백상지 80 g/m²]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COMPLIANCE for Meteorological Instrument							
Company	Name of Company			Company Registration Number			
	Name of Representative			Phone Number			
	Address						
Contents	Description						
	Instrument Name	Manufacturer	Model (Specification)	Manufactured Date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Manufacture No.	Remarks (Site)
	※ Attachment: Test report(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meteorological instrument above has been tes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e Weather Observation Standardization Act, and Article 7,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ssued on mm/dd/yyyy							
[] Administrator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Head of the Compliance Organization							
※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__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210 mm×297 mm[백상지 80 g/㎡]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검정분야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 사업계획서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기상전문기관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측시설 장애 및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감시 2. 관측시설 장애 초동대응, 지원 및 조치 결과 확인 3. 기상관측자료 품질 관리 4. 기상측기 예비품 관리 5.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사업 총괄 6.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상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다.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 ----- ----- ----- ----- ----- ----- ----- ----- -----
1. 2. (생략)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 2. (현행과 같음) ② ----- --- 담당자는----- ----- ----- ----- ----- -----사업자등록증명----- -----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생 략) 2. <u>사업자등록증</u> ③ ~ ⑧ (생 략) ⑨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형식증인서 또는 변경증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형식증인서·변경증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⑪ (생 략) 제6조의5(형식증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u>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형식증인서 또는 변경증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증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증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u>형식증인서 또는 변경증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관한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u> ⑩·⑪ (현행과 같음) 제6조의5(형식증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생 략) 2. <u>사업자등록증</u> 3.·4. (생 략)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u>시설·장비</u> 3. <u>기술인력</u> ④ ~ ⑧ (생 략)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u> 3.·4.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u>대행업무의 범위</u> <삭 제>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 ----- ----- ----- ----- ----- ----- ----- ----- 말한다. 이
--	---	--	--

제 제출해야 한다.	<u>하 이 조 제2항에서 같다</u>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①·② (생 략)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u>	2.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u>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u> <u>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u>

	<u>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u>
--	-----------------------